

4.4.4 연구및학술활동비지원지침

제정 1999. 06. 09.
개정 2000. 04. 21.
개정 2006. 11. 24.
개정 2007. 05. 29.
개정 2010. 10. 21.
개정 2016. 02. 18.
개정 2016. 04. 01.
개정 2017. 09. 14.
개정 2018. 01. 25.
개정 2018. 02. 27.
개정 2018. 07. 26.
개정 2020. 05. 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초당대학교 전임교원에 대한 각종 연구비 및 학술활동보조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과제”라 함은 본교에 설치된 학과별 전문분야에 관한 학술연구를 위한 과제를 말한다.
2. “정책연구과제”라 함은 본교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과제를 말한다.
3. “전공학회지 논문게재”라 함은 SCI급(SCI-E 포함, 이하“SCI급”)혹은 학진등재지(후보포함)에 게재된 논문(이하 “KCI급”)으로서 KRI(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되고 검증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0.10.21.> <호 이동 2016.02.18.>
4. 삭제 <2016.02.18.>
5. 삭제 <2016.02.18.>

제3조(연구비 지급범위) 다음 각 호의 저자 소속이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저자의 소속이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17.09.14.>

1. 학술연구과제
2. 정책연구과제
3. 전공학회지 논문게재 <호 이동 2016.02.18.>
4. 삭제 <2016.02.18.>
5. 삭제 <2016.02.18.>

제4조(연구비 재원) 이 지침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한다.

1. 대학 연구비 예산
2. 기타 연구지원 재원

제5조(신청자격) 1. 본교 전임교원

2. 6개월 이상의 기간 파견근무 경우 파견이 종료된 자 <개정2020.05.29.>

3. 기타 연구수행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신청절차) ① 각종 연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기획연구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0.21. 2016.02.18.>

② 삭제 <2018.02.27.>

제7조(연구기간) 학술연구과제는 1년, 정책연구과제는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05.29.>

제8조(분야별 지급기준) 분야별 연구비 지급은<별표 1>과 같다.

전 호 삭제 <2016.02.18.>

제9조(지급방법) ① 연구비는 지급신청시 50%, 중간보고서 제출시 50%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000만원 이하의 연구비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02.18.>

② 논문 게재비는 평가 직전학기의 연구실적을 4월1일자, 10월1일자 기준 KRI(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자료에 의거하여 4월 및 10월에 지급한다. <개정 2010.10.21., 2016.04.01.>

③ 삭제 <2010.10.21.>

④ 삭제 <2010.10.21.>

⑤ 삭제 <2010.10.21.>

제10조(지급중지·회수) 연구비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한다. 단, 기 지급된 연구비에 대해서는 연구비 회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9.>

1. 특별한 사유로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2.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때

3. 연구기간을 경과하였을 때

4. 연구결과를 보고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6.02.18.>

5. 본교 교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신설 2020.05.29.>

제11조 삭제 <2016.02.18.>

제12조(연구비 정산) ① 연구비는 승인된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②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6조관련서류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집행 할 수 있다.

③ 연구비 정산은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며, 미 제출시 해당 연도 말에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09.14. 2018.01.25., 2018.02.27.>

제13조(보고서 제출) 학술 및 정책연구과제는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및 연구실적물을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개정 2020.05.29.>

제14조 삭제 <2016.02.18.>

제15조(연구계획변경) ①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자가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등의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계획변경은 연구기간 내에, 결과보고기한 연장은 결과보고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각종 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외부 연구비 지원기관(한국학술진흥재단 등)의 기준을 참조한다.

제17조(연구위원회 구성) ① 교내연구정책과제의 종합계획 및 기타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위원회를 심의 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연구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연구위원장이 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7.09.14.>

제18조(심사 및 선정) 지원신청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하고, 연구비의 조정, 연구계획의 변경을 조건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2.27>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 가능성
4. 연구수행체계의 합리성

<신설 2017.09.14>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 <별지서식 13> 삭제 <2016.02.18.>

<별표 1> 분야별 연구비 지급기준 <개정 2010.10.21. 2016.02.18. 2018.01.25. 2018.02.27. 2018.07.26>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지 원 금	비 고
연 구 비	· 학술연구과제	· 책정된 연구비 중에서 학내 공모에 의해 채택된 과제에 한하여 일정액을 지급	
	· 정책연구과제	· 책정된 연구비 중에서 본교 발전에 필요한 특정과제에 한하여 일정액을 지급	
논문게재	· 국내저명학술지	· 30만원	· 공동게재의 경우 주저자 및 교신저자 : 2/(n+2) 공동저자 : 1/(n+2)
	· 국제저명학술지	· 50만원	